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가합5184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진호연

피 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박경호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2021. 4. 1.자 10,811,831,37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11,831,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의 대출과 근저당권 및 우선수익권 등

-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2002. 10. 24. 용인시 기흥구 D 대 16,552㎡ 중 8264/16552 지분 및 위 토지 지상 E동, F동 건물(이하 위 토지 지분과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C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7. 채권최고액 62억 4,000만 원, 2007. 2. 22.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2008. 8. 22.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각 B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81억 9,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대출 당시 C의 대표이사 H가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의 대표자로 H의 아들인 I은 그중 9억 원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C은 위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9. 10. 15.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B을 우선수익금액 24억 7,000만 원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J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4) B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2013하합46)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피고가 위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되고, 추가로 우선수익금액 10억 원으로 한 2순위 우선수익자도 되었다.

나. C의 어음공정증서 작성 및 원고의 채권양수, 근질권설정

- 1) C의 대표이사 H는 2015. 6. 5. 발행인을 C으로 하여, I에게 액면금 29억 7,000만 원, K에게 액면금 45억 6,000만 원, L에게 액면금 44억 원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차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M 2015년 제171호, 제172호, 제173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 2) I, K, L(이하 위 3명을 함께 지칭할 때 'I 등'이라고 한다)은 2017.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3. C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16.경 위와 같이 양수받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C과 위 신탁계약에 의한 C의 수익권에 관하여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과 담보 한도는 C이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기왕에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채무를 135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로 정하였고(제1조), 입질되는 신탁수익권의 범위는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체결 및 그 이후 C이 수익자로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신탁수익권 및 이에 갈음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에 미친다고 정하였다(제2조). J은 2017. 11. 16.경 이 사건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조정 및 변제계획 제안,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 1) C은 피고에게 2019년 12월경 “이 사건 대출채권 중 135억 원을 일시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과 동시에 위 채권에 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의 채무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2020년 2월경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부 채권 등에 비추어 피고가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시로 135억 원을 지급하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150억 원의 한도 내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 채무조정 및 변제계획과 관련한 제안서를 보냈다.

2) 피고는 2020. 4. 24.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C이 체결한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J에 그 취소 통지를 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7690,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3) 2020년 6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C은 2020. 6. 11. 피고에게, “이 2020. 6. 10. 피고 앞으로 우선수익권부 채무 23억 원과 J가 요구한 법적비용 합계 2,422,930,571원을 공탁(이하 ‘의 공탁’이라 한다)했으니, 우선수익증권을 교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통지를 보냈다.

4) C은 2020년 8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부 채권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C의 부채 현황, 과거 공매절차에서의 유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 외에 배당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직접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관련 소송에서

100억 원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니 제안에 응해달라”는 내용의 채무조정 및 변제계획 제안서를 다시 보냈다.

5) 피고는 2020. 9. 3.경 C에 “C이 제안한 내용은 채무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와 이 사건 대출채무 변제 등

1)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21. 3. 26.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C은 2021. 3. 29. 피고에게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가 본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을 대위변제하고, 또한 I의 공탁금액을 포함해 채권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N는 2021. 4. 1. 피고에게 19,826,768,466원을 입금하였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N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관련 소송의 소를 취하하였다.

4) 피고는 2021. 5. 28.경 원고에게, 22,471,831,370원(= 대출원금 7,300,000,000원 + 대출이자 15,104,279,861원 + 가지급금 67,551,509원)의 이 사건 대출채무가 N의 위 입금액 및 I의 공탁금 등으로 모두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2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인 N는 C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는 이른바 단축급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제일인 2021. 4. 1. 당시 C에 대하여 115억 2,000만 원(=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한도 135억 2,000만 원 -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동의 조건으로 C으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이 있었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250억

원의 약 90%에 이르는 22,471,831,37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는바, 그중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인 116억 6,000만 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81억 9,000만 원 +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금액 24억 7,000만 원 + 2순위 우선수익금액 10억 원)을 초과한 10,811,831,370원의 변제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10,811,831,370원의 변제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0,811,831,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59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 중 N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의 경우 이른바 단축급부로 C의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로 볼 수 있더라도, I의 공탁금의 경우 이를 C의 변제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의 단축급부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변제가 모두 N의 입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우선 그 점에서 부당하나, 이하 특별히 구분 없이 이 사건 변제를 C의 변제행위로 보아 사해행위가 되는지 살펴본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 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변제행위가 C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C이 약 10년 동안 I 등으로부터 부동산 자금 등 명목으로 투자받았고, 각 투자금에 이자, 용역대금, 투자수익 등을 더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에, K는 2012. 1. 26. 2억 6,000만 원을, L은 2005. 12. 28. 1억 원, 2006. 1. 6. 1억 원, 2006. 2. 10. 4,000만 원, 2006. 3. 23., 2,000만 원, 2006. 4. 25. 1,000만 원, 2006. 5. 16. 3,500만 원, 2006. 10. 12. 1,500만 원, 2006. 10. 24. 1,500만 원, 2006. 11. 23. 2,000만 원, 2007. 1. 23. 2,000만 원, 2007. 3. 6. 2,000만 원 합계 3억 9,500만 원을, I은 2002. 11. 29.부터 2015. 3. 11.까지 총 256,290,000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8, 20, 22호증 등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지급액도 위와 같다. 위 각 지급액은 C이 I 등에게 작성교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 액면금의 1/10도 되지 않는다.

원고는 I 등이 C이 아닌 C의 대표이사 H의 개인 계좌에 송금한 돈도 C에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H의 개인 계좌에 송금한 돈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K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총 15억여 원, L 또는 L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O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6억여 원, I은 총 20억여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금액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현저히 미달하고, 위 각 금액에 이자, 용역대금, 투자수익 등을 더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가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경위도 불분명하다. 원고는 “개인 채권자인 I 등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어려워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절차를 일원화한 뒤 채권

추심 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의 권리관계는 원고에게 귀속되며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I 등에게 정산의무를 이행한다”라는 추상적인 내용 외에 구체적인 정산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오히려 ①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이던 2017년 11월경 I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받은 점, ② C이 2019년 12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으로 담보되는 채무 등의 부담 현황을 언급하며 이 사건 대출채권 중 135억 원 내지 150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채무조정을 요청한 점, ③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요구종기일이 지정된 후 I 등의 요청으로 C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④ 원고의 대표자 I은 C의 대표이사 H의 아들이고 이 사건 대출채무 중 일부의 연대보증인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I 등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린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해 주고 원고로 하여금 그 채권을 양수하게 하여 C의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해준 다음, 이를 주된 사유로 내세우며 피고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 면제받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부나 범위, 채권양도 및 근질권설정 경위 등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보이는 상황에서, C은 이 사건 근질권부 채권 등을 주된 이유로 들며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는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C은 최초 보낸 제안서에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며 이 사건 근질권부 채권 외에 I 등의 임금채권으로 약 15억 원 등까지 별도로 주장하다가, 2020. 2. 3. 보낸 제안서에서는 조세채권 외에는 이 사건 근질권부 채권만 C이 부담한다는 채무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에게 C의 일방적인 채무조정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위와 같이 C이 채무조정 제안의 근거로 내세운 채권의 진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조정 요청 금액이 공매절차 등을 통한 회수가능액보다 적어서 피고의 ‘파산재단 채무자 채무조정기준’에 의한 채무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금융경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복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를 위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공적 기능을 하는 공사¹⁾로서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채권액은 파산은행의 피해 예금자에

대한 구제 재원 등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위와 같은 공적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그 진위 등이 의심되는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공매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변제받으려고 하였을 뿐 그 절차나 과정 중에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피고가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고의 채권을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공매절차를 통해서는 부동산을 제값에 처분하기 어려워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한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피고가 임의매각을 위해서는 우선수익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월적 지위 및 C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의 채무조정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를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 전부의 변제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인 피고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달리 피고가 C에 채무 전액의 변제를 강요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C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I 등에게 작성해주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해준 점이나 C의 대표이사과 원고 대표자와의 관계, C이 보냈던 제안서에서 언급한 채권의 내역 등에 비추어, C이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C에 이 사건 변제로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C과 통모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변제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변제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통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C이 사전에 피고에게 제안서 등을 보내면서 상호 연락을 했음을 이유로 피고의 변제 강요에 대한 C의 소극적 동조로 통모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호 간에 공통된 인식의 교환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와 C은 공통된 인식 아래 채무조정 등에 관해 연락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실제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액수를 초과하여 변제를 받은 것도 아닌 점, 피고는 C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채권자일 뿐인 점, 피고가 정당하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는 과정 중 C이 경제적 득실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이 사건 변제를 한 것인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제외할 경우 C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C은 관련 소송에서 본인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변제가 채무자인 C과 채권자인 피고가 통모한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연, 판사 김지영, 판사 김민주

1)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1헌가1, 2, 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